의안번호 제1474호

검 토 보 교 서

1. 검토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8. 8. 28.(화)

나. 제 출 자 : 이명녀 의원 외 10명

다. 위원회 회부일자 : 2018. 8. 28.(화)

라. 위원회 심사일자 : 2018. 9. 7.(금)

2. 제안이유

○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여비 지급 기준을 현실화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코자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지방의원의 여비 지급기준 개선(안 제4조)

-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을 준용하도록 별표 1 개정
- 별표 2 삭제

4. 관련법령

- 가. 「지방자치법」 제33조(의원의 의정활동비 등)
- 나.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제33조(의정활동비・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기준 등)

5. 검토의견

- 의안번호 제1474호,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,
-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 지급하는 국내여비와 국외여비의 지급기준이 「지방자 치법 시행령」 개정에 따라 변경되어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을 준용하도 록 관련 제4조를 개정하여 출장여비를 현실화 하는 것으로,
- 조례 개정에 따른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,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 이 없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.